

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

귀하(귀사)의 체납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).

납세자	성명 (상호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
	주소 (사업장)			
국세 체납 명세(총체납세액: 원) (단위: 원)				
세목명	납부기한	내국세	가산금	계
명단공개 내용 및 해명 기한				
명단공개 예정일				
명단공개 방법	관보, 국세청 홈페이지, 세무서 게시판			
해명 기한	년 월 일			

만약 귀하(귀사)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 명세를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끝.

발신명의

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	직위(직급)	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	서명	결재권자	직위(직급)	서명
협조자								
시행	처리과명-연도별	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연도별	일련번호(접수일자)			
우	도로명주소		/ 홈페이지 주소					
전화번호()	팩스번호()	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		/ 공개 구분			